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0. 2 . 3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2000. 2. 10

다. 상정일자 : 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특위(2000.2.1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영선)

가. 제 안 이 유

- 지방세감면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 특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내 용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범위 확대(안제2조,제4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면제로(안 제10조)
- 임대주택 감면조항 개정(안 제13조)
- 농촌특산품 생산단지 관련법 개정(안 제15조)
-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안 제17조)
-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 (안 제18조)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5조)
-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사항규정 (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 본조례안을 각 조항별로 검토하면

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안 제2조 및 제3조)

- 본 조항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권자의 직계존비속 명의등록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던 자동차세를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신청할 경우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과 장애복지법의 입법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됨.

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여 주던 것을 면제하려는 것임.

문화재 관리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됨.

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 본 조항은 공공단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과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5세대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2세대로 확대하여 면세하므로 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라.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등에 관한 감면(안 제15조)

- 본 조항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을 하여 주는 규정이나 '99년 2월 8일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삭제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허가에 관한 규정이 동법 제28조 제1항과 5항으로 신설되었음

따라서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마.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안제17조 제18조)

- 본 조항은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노외주차장으로서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주차전용 토지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을

현재까지 단한건의 대상도 없는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판단하에 삭제하려는 것이나 본 조항의 취지가 장래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바.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감면(안 제27조)

- 본 조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는 법률 불합치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사.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34조)

○ 본 조항은 수도권 과밀지역 억제를 위하여 신설하는 조항임.

○ 1998년 12월 3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지방이전에따른감세)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 적극적인 국가정책 실현과 우리군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전체적으로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였고 자구등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1부. 끝 .